

# 선거

## 1. 공정한 선거

### 가. 민주선거 4대 원칙

<b>보통</b>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 (↔ 제한 선거) 예) 부재자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 미부여
<b>평등</b>	거인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제도/표의 등가성 실현 (↔ 차등 선거) 예) 선거구 간 투표 가치의 차등 (과도한 인구편차) 선거구 내 투표 가치의 차등 (중/대 선거구제 당선자 단 득표율 차이)
<b>직접</b>	선거인이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 (↔ 대리 선거) 선거인단을 통한 선출 방식, 우편 투표, 전자 투표 등 포함 예) 1인 1표제에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를 정당 투표로 간주
<b>비밀</b>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공개 선거)

### cf) 별도 정당투표 없이 지역구 투표율로 비례대표 배분하는 공선법 '1인 1표제 선거제도' 위헌판결 요지

<p>(1) 유권자가 1표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와 지지 정당이 다른 경우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b>민주주의 원리 위반</b>) (2) 지지 정당에 대한 별도의 투표 과정 없이 선거권자들의 투표행위로서 정당의 의석배분 (→<b>직접선거 원칙 위반</b>) (3) 어떤 선거권자의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지역구위원의 선출에 기여함과 아울러 그가 속한 정당의 비례대표위원의 선출에도 기여하는 2중의 가치를 지닌 반면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비례 대표 의원의 선출에 전혀 이바지하지 못해 투표 가치의 불평등 초래 (→ <b>평등선거 원칙 위반</b>)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 위헌 결정) → 現 '1인 2표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도입</p>
---

### 나.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확정)

<p>헌법 제41조 3항 : 국회 의원의 선거구와 비례 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b>법률로 정한다</b>. → 헌법의 위임을 받아 공직선거법에서 중앙선거위원회에 선거구 확정위원회를 두어 <b>선거구를 법률로서 확정</b></p>
--

### 선거구 확정 시 고려요소

- ① 표의 등가성 보장 : 선거구의 규모 차이가 크면 유권자의 투표 가치 차등 발생
- ② 인구 구성 균형 : 선거구마다 유권자 차이가 크면 투표 가치의 차등 발생

③ 게리맨더링 방지 :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 획정 방지

例) 현재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 상한선은 27만 3130명, 하한선은 13만6565명

→ 결국 상한선보다 높으면 분구, 하한선보다 낮으면 통합

cf) '게리맨더링'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는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하여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당의 지지표를 집중시킴으로써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선거구들 가운데 하나의 윤곽이 샬러맨더(salamander : 도롱뇽)를 닮은 것으로 생각되어 게리와 샬러맨더를 합성한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며 선거인 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의 2대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여 비난 → 선거구 법정주의 제도화

## 2. 선거 제도

가. 선거구제에 따른 분류

구분	소선거구제 (1선거구 1인 배출)	중/대 선거구제 (1선거구 다수 배출)
의미	<p>한 선거구에서 최대표를 획득한 1명의 대표자만 선출 (Winner takes all)</p> <p>→ 선거구 수와 당선자 수가 일치</p> <p>→ 최대득표를 받은 다수득표자만 당선</p> <p>예) 甲 선거구 1명, 乙 선거구 1명, 丙 선거구 1명</p>	<p>한 선거구에서 최소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p> <p>→ 선거구 수와 당선자 수(의석수) 불일치</p> <p>→ 최대득표를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도 당선</p> <p>예) 甲, 乙, 丙 통합한 선거구에서 3명 선출</p> <p>→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짐</p>
장점	<p>▲ 최대 다수득표자 1인만 당선</p> <p>→ 대중적 경쟁력이 있는 다수당 유리,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군소정당은 불리</p> <p>→ 다수당 중심의 양당제 정착을 통해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하여 정국 안정 가능성 有</p> <p>예) 미국의 공화당 vs. 민주당</p> <p>▲ 다수의 지지를 얻는 최대다수득표자만 당선</p> <p>→ 지역구의 winner라는 대표성의 원리 충실</p> <p>예) 광주 의 아들 000</p> <p>▲ 선거구의 지역적 범위가 넓지 않음</p> <p>→ 선거관리 용이 and 선거비용 ↓</p> <p>▲ 선거구당 후보자가 적고 1등만 기억하여 선출</p> <p>→ 유권자들이 후보자 파악 용이</p> <p>→ 정치적 책임 소재 파악 용이</p>	<p>▲ 한 선거구에서 1등 이외의 다수 선출</p> <p>→ 1등 이외의 다른 투표도 반영되어 사표가 적음</p> <p>→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 감소</p> <p>(예 모든 지역구에서 2등만 하여 의석수가 없으나 득표율은 1등인 당의 출현 가능성 ↓)</p> <p>→ 대중적 경쟁력이 없는 군소정당, 대중적 인지도가 없는 신진인사 유리</p> <p>→ 다양한 폭의 국민 의사 반영 가능</p> <p>예) 환경을 우선시 하는 녹색당 지지</p> <p>→ 다당제 정착 可</p> <p>▲ 甲, 乙, 丙 통합한 선거구에서 3명 선출</p> <p>→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음</p> <p>→ 당선자의 폭이 넓어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음</p> <p>→ 지역적 winner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적 지명도가 있는 사람 당선 가능성 ↑</p> <p>예) 전라도 광주에서 강호동 출마시 가능성 有</p>

단 점	<p>▲ 최대 다수득표자 1인만 당선 → 1등만 선거에 반영, 사표 발생 →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 (예 모든 지역구에서 2등만 하여 의석수가 없으나 득표율은 1등인 당(과소대표) 출현 가능) → 과다대표, 과소대표 문제 발생 * 의석율 &lt; 득표율 : 과소대표 * 의석율 &gt; 득표율 : 과대대표 → 다수당의 선거구 조작을 통한 선거부정 우려 有 → 군소정당에 불리 → 지역 토착 인물(연고주의)이 당선 가능성 ↑</p>	<p>▲ 여러 명(甲지역구 3명) 당선 → 1등과 소수표 당선자 모두 동일 당선자 → 투표가치의 차등 문제 발생 (예 1등 5만표, 2등 천표, 3등 500표 모두 당선)  ▲ 선거구 범위 넓음 → 선거구 관리 어려움, 선거비용 ↑ → 군소정당 난립 시 정국 불안정 우려 → 후보자 난립 시 유권자 정치적 무관심 초래 可 (예 : 3명 선출하는 甲 지역구에 후보 30명 등록)</p>
--------	---	--

나. 대표 결정방식에 따른 분류

구 분	내 용
지 역 대 표 제	<p>▲ 단순 다수대표제 (상대다수 대표제) → 후보자들 중에서 정해진 당선자 수에 따라 한표라도 더 많이 획득한 후보자가 득표순으로 당선</p> <p>▲ 절대 다수대표제 → 후보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획득해야 당선되는 방식,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p> <p>* 결선 투표제 : 1차 투표결과 일정 비율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상위 1위와 2위 득표율을 얻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 결정 (프랑스 대통령 선거)</p> <p>* 선호 투표제 :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의 선호 순위를 표시하고 투표결과 1순위 표를 기준으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순위 표가 가장 적은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그 후보자를 1순위로 택한 표를 2순위로 택한 후보자에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 (호주 대통령 선거)</p>
비 례 대 표 제	<p>▲ 정당 제도를 전제로 각 정당별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p> <p>㉠ 고정명부식(폐쇄형) : 유권자는 각 정당에 대해서만 선택,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 기재 후보자 선택은 불가 → 후보자 명부 작성으로 당선자가 결정되어 공천위원장의 과도한 영향력 폐해 有</p> <p>㉡ 가변 명부식(개방형) : 유권자가 각 정당에 대해서 선택을 할뿐 아니라 각 정당이 제시한 명부 기재 후보자를 직접 선택 할 수 있음</p>
연 동 형	<p>▲ 정당 지지율을 통 의석수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 →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여 정당별 득표율에 정당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의 합 일치 (<u>전체 의석수 × 정당 득표율</u> = 정당 지역구 의석수 + 정당 비례대표 의석수) ↳ (지역구 의석수 + 비례대표의석수) → 비례대표 의석수 = (전체 의석수 × 정당별 득표율) -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p> <p>※현 공선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p>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 30명은 연동형으로 17명은 단순 병립형으로 선출 단순병립형 정당 의석수 = 17 × 정당 득표율
<b>봉쇄조항</b>	<p>▲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할당 but 득표율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면 의석 배정 x</p> <p>→ 군소정당 난립을 방지 국정 안정</p> <p>→ 비례대표 의석수 = (전체 의석수 × 정당별 득표율) -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p> <p>現 공선법 봉쇄조항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li> <li>2.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li> </ol>
<b>장점</b>	<p>→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결정되므로 사표 발생이 최소화되고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p> <p>→ 득표율과 의석률을 최대한 일치</p> <p>→ 소수당에 유리하여 국민 각계 계층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p> <p>→ 소수파의 의회진출을 용이하게 하여 다수당 횡포 방지 가능</p> <p>→ 정당에 대한 득표율을 반영하는 만큼 참된 정당정치 구현 가능</p>
<b>단점</b>	<p>→ 선거 절차와 방법이 복잡</p> <p>→ 정당득표율에 따라 군소정당 난립시 정국 혼란</p> <p>→ 공천위원장의 권력에 따라 당선이 좌우되는 만큼 정당 간부 권력 독점화 가능</p> <p>→ 당선자는 지역 및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대표 전략 가능</p>

### 3. 우리나라 선거제도

#### 가.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내용
<b>대통령 선거</b>	<b>5년 단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선거권 40세 ↑, 선거권 18세 ↑</li> <li>- 단순 다수 대표제, 상대 다수 대표제</li> <li>-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회 재적과반수 출석 공개회의 다수 득표자 선출</li> <li>- 후보자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1/30이상 득표 要</li> </ul>
<b>국회의원 선거</b>	<b>4년 연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선거권 25세 ↑, 선거권 18세 ↑</li> <li>- 소선거구제, 상대 다수 대표제</li> <li>- 1인 2표제 정당명부식(폐쇄형) 비례대표제도</li> <li>1인1표제 공선법 조항 현재 위헌(민주주의 원칙, 직접선거, 평등선거위반)판결</li> <li>- 준연동형 비례대표 (비례대표 47명 중 30명은 연동형 + 17명은 병립형)</li> <li>- 봉쇄조항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해야 함)</li> <li>3.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3/100 이상 득표</li> <li>4. 지역구에서 5석 이상 당선</li> </ul>

나. 지방자치선거 (피선거권 25세 ↑, 선거권 18세 ↑)

	선출직 명칭		임기	특징
지방자치 단체장 (집행기관)	광역자체장		4년 3회 연임	단순다수대표제
	기초자체장			
지방의회의원 (의결기관)	광역 의원	지역구	4년 연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기초 의원	지역구		중선거구제, 소수 대표제
		비례대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교육감	광역 교육감		4년 3회 연임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정당공천x (정치적 중립)

cf) 광역 : 특별시, 광역시, 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기초 : 시, 군, 구 (성남시, 충북 영동군, 강남구)

*공유와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리갈 마인드 랩스 copyright.

End of document.